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703

2024. 10. 18.(금) 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0월 11일

-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승환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15조 및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」제9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'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' 위·수탁 협약기간 만료('24.12.31.) ○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O 대상사무 :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수탁기관 : 정신건강증진시설*,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
 - *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
 - ※ 現 수탁기관 : 충북대학교 병원('22.1.1~'24.12.31)
- 선정방법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에 따름
- O 위탁금액: 年3,472백만원(기금^{50%}1,736, 도비^{50%}1,736) * '24년 예산기준
- O 위탁내용
-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, 자살현황 분석, 자살 및 정신관련 종사자 교육
-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,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
- 정신보건사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, 홍보 등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○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²⁴)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,

^{24) 「}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 제9조제2항²⁵⁾ 에 따라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탁 운영 중임.
 - ※ 위탁운영 약정체결 현황: 최초(13.5.15~'15.12.31), 1차('16.1.1.~'18.12.31.), 2차('19.1.1~'21.12.31.), 3차('22.1.1.~'24.12.31.)
-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('24. 12.3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.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5조제2항²⁶⁾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^{25)「}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제9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)

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.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^{1.} 정신건강증진시설

^{2. 「}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^{3.}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

^{26)「}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 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<u>시·도지사</u> 및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<u>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<u>정신</u> 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□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(**정신건강복지센터**의 설치 및 운영 등)
 - 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<u>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</u> 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정신건강증진시설
 - 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 -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
- 또한, 센터의 사무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바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호에 따른 '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'에 해당되며,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함.
-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
 - 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- 따라서,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무의 내용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5조²⁷)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충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으로,
 - 센터의 민간위탁은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사무 내용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바 민간위탁 운영이 오히려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- 단 이후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 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」

^{27) 「}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<u>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</u>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

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

동의안

의 안 번 호 703 제출연월일: 2024년 10월 2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○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15조 및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제9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'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'위·수탁 협약기간 만료('24.12.31.)
-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수탁기관 : 정신건강증진시설*,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
 - *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
 - ※ 現 수탁기관 : 충북대학교 병원('22.1.1~'24.12.31)
- 선정방법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에 따름
- 위탁금액: 年3,472백만원(기금^{50%}1,736, 도비^{50%}1,736) * '24년 예산기준
- 위탁내용
 -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, 자살현황 분석, 자살 및 정신관련 종사자 교육
 -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,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
 - 정신보건사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, 홍보 등

- 향후 추진계획
 - 수탁기관 모집 및 심사위원회 구성 : '24. 10. ~ 12.

-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: '24. 12.

-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: '24. 12.

3. 참고사항

○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추진계획(붙임1)

4. 관계법령 발췌(붙임2)

- 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 제9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5. 기타
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(붙임3)
- 민간위탁 성과보고서(붙임4)

붙임1

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무 재위탁 추진계획

Ⅰ, 추진배경 및 근거

□ 추진배경

-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정신건강수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 지지 체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 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
-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·재활 등 정신 건강증진 도모, 중독관리·자살예방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

□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O ·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 제9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
- O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

Ⅱ, 위탁개요

○ 위탁사무 :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
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

- ·소 재 지 :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(개신동) 지오빌딩 2층
- · 운영인력 : 6개팀 총 40명
- 센터장1, 부센터장1, 상임팀장2, 정신건강복지1팀7, 정신건강복지2팀6, 충북청년마음건강센터6, 자살예방1팀6 자살예방2팀5 응급개입팀4, 회계·행정2
- **現수탁기관** : 충북대병원(병원장: 김원섭) / 센터장 : 정준형(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), '22.1.1.~'24.12.31.(3년)
- O 위탁기간: 3년('25.1.1. ~ '27.12.31.)
 - 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4항

- O 위탁방법: 공개모집을 통한 사무위탁
 - 자격요건 : **정신건강증진시설*,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***정신건강증진시설 :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
- 사업비: 3,472백만원(기금 1,736백만원^{0%}, 도비 1,736백만원^{0%}) *변동가능
- 주요업무
 -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, 자살 현황분석. 자살 및 정신관련 종사자 교육
 -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,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
 - 정신보건사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

Ⅲ, 위탁운영 추진체계

TITEO TEMA

추진체계 주 요 내 용

추진일정

① 위탁계획수 립

-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계획위탁방법, 위탁기간, 위탁사무 등
- '24.9월 중

- ② 의회동의
- 충청북도 시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의거 의화동의 得

'24.10. 임시회

- ③ 수탁기관 궁 모
- 공모방법 : 공개모집(도 홈페이지)
- 공모기간 : 20일 ~ 30일
- 자격요건 : 정신건강증진시설, 정신건강관련

학과가 설치된 대학

′24.10.~11.

④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및 선정

-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: 6~9명
- 심사항목 : 수행능력, 전문성, 사업계획등
- 수탁기관결정 : 고득점자

′24.12.

- ⑤ 위·수탁 계약체결
- 계약기간 : 3년
- 위·수탁계약서 공증

24.12.

- ⑥ 위탁운영
-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(수탁기관)

′25.1. ~′27.12.

Ⅳ, 세부 추진계획

① 도의회 동의

O 관련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제2항

❖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'의회'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의회보고: 서면보고(9월), 정책복지위원회 안건 제출(10월)
 - ※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: '15.10.2.(제234회)

② 수탁기관 공모

- O 공모기간: 2024. 10. ~ 11.
- 공모방법 : 공개모집(도 홈페이지, 공고문 '붙임1')
- O 응모자격
 - 충청북도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*
 - * 정신건강증진시설 :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
 - 충청북도 소재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·결정(고득점자)
- O 위탁조건
 - 보조사업비 외 추가지원 없음, 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 적용
 - 사업공간 확보 및 사업수행 인력 고용승계
 - (계약해지) 계약내용과 달리 운영, 법인허가 취소 등
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※ 별도 계획 수립

- 심사위원회 구성:6~9명 이내
 - 당연직 : 기획관리실장(위원장)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
 - 관련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 및 제7조
- O 개최시기 : 2024. 12.
- O 심사항목: 업무수행능력, 사업실적, 전문성, 사업계획*등
 - * 사업계획 : 응모기관별 20분 이내
- O 선정방법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·최고점기관 결정
 - 최고·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,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
 - 1개 기관 공모 경우: 70점 이상·과반수 찬성으로 선정
 - 기타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함

④ 위·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

- O 체결시기: 수탁기관 선정 후
- O 내 용:계약체결 및 공증
- ❖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9조(계약의 체결)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▽▽향후계획

- : '24. 10. O 의회 보고
- O 수탁기관 모집 및 심사위원회 구성 : '24. 10. ~ 12.
- O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: '24, 12,
-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: '25, 1,

붙임1

관계법령 발췌 및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

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5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② <u>시·도지사는</u>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광역정신건강복지</u>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

- 제9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정신건강증진시설
 - 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 -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
 -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- 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
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	평점
계		100	
신청기관의 전문성 (20점)	기관 사업추진 전문성, 사업수행의지 - 시설·장비기술 보유 여부 등	20	
신청기관의 사업실적 (10점)	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 -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경험 등	10	
사업계획의 충실도 (40점)	사업목적, 비전, 추진방향, 전략	15	
	사업현실성·적정성·사업량·창의성	15	
	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	10	
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(15점)	센터 인력 고용승계 여·부	5	
	정신건강분야 전문인력 확보	5	
	수탁기관 사무 공간 등 지원 범위	5	
예산편성의 적정성 (10점)	사업예산 배분의 적정성	5	
	센터운영비의 자부담 능력	5	
운영능력평가(5점)	전반적인 사업 발전가능성 등	5	

붙임2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

□ 추진근거

○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

②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견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정신보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 시설(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 시설)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보유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정신보건 관련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 하다고 판단됨	
③ 경제적 효율성	○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, 정보, 협업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체계 구축 가능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용이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	○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이 풍부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보유 대학 에서 위탁 운영 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됨	